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8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5호, 2021.11.1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11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차11 근관세척	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	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. 다만,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		
I. 행위			I. 행위		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			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		
차11 근관세척	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	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~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인정함 다만,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	차11 근관세척	차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	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. 다만,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